



보도	2024.7.15.(월) 조간	배포	2024.7.12.(금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	책임자	팀 장	박운규	02-3145-8288
		담당자	조사역	박기택	02-3145-8260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검사2팀	책임자	팀 장	김상희	02-3145-8280
		담당자	선임검사역	송윤재	02-3145-8282

건전한 대부 영업을 저해하는 허위 자본금 납입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.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·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였음
 - '23.12월~'24.1월 중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부당행위*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고,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음
 - * 경매 배당금 부당수취,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압류 등
- 한편, '24.5월 중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음
 - 동 점검 결과,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(50억원)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음

[대부업체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]

- (점검대상) 대표이사,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
- (점검일정) '24.5.13 ~ '24.5.31.
- (점검내용)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여부

II. 점검 내용

- (혐의내용)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있음
 -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*을 이용하여,
 - * 상업등기규칙 등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나,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
 - 자기자본요건(5억원) 및 총자산 한도(총자산/자기자본 ≤ 10)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
- (세부경위) '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(1월) 및 2회 증자(5월, 9월)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(3회, 총 20억원)을 납입하였으며,
 - 이후 '20.6월, '22.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(각 10억원, 20억원)을 미납입하였음

자본금 변경 등기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등기일	자본금	증액	실제 납입일	납입여부	비고
'19. 1.25.	500	-	'19. 3.28.	사후 납입	회사 설립
'19. 5.31.	1,000	500	'19.10.29.	사후 납입	-
'19. 9. 3.	2,000	1,000	'19.11. 7.	사후 납입	-
'20. 6.15.	3,000	1,000	-	미납입	-
'22. 6.20.	5,000	2,000	-	미납입	-

III.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**납입가장행위***가 확인된 **최대사원 B**에 대해서는 **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**하였으며,

* 상법(§628) : 회사의 발기인, 업무집행사원, 이사, 집행위원, 감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

○ **자본금을 허위기재하여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**에 대해서는 **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임**

○ 아울러 추후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(24.7월 개최 예정)을 통해 **금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**하도록 하겠음

□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**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**하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